

2016년 제6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□ 개최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16. 10. 6.(월), 서면의결
- 참석위원 : 총10명
 - 위원장 : 부원장 (신창호)
 - 위 원 : 9명 (연구실장 및 센터장)
- 심의안건
 - 인장관리규칙 일부개정(안)

□ 심의결과 : 원안의결 1건

안 건 명	의 결 내 용		
	원안의결	수정의결	부 결
근로복지기금 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○		

□ 심의안건 및 주요내용

-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적용대상 확대

현 행

개 정

상근임원과 정규직원

상근임원과 직원

□ 부칙

- 다른 지침의 개정 : 「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시행지침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신청대상 중 ‘상근임원·정규직원’을 ‘상근임원·직원’으로 한다
- 시행일 :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: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

[붙임] 근로복지기금 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적용대상)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상근임원과 <u>정규직원</u>(이하 ‘임·직원’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1.<u>상근임원</u></p> <p>2.<u>정규직원</u></p>	<p>제4조(적용대상)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상근임원과 <u>직원</u>(이하 ‘임·직원’이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1.<삭제></p> <p>2.<삭제></p>